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 181

발의연월일: 2023년 9월 27일

발 의 자: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: 이은미, 김광성, 박춘희 의원

1. 제안이유

노후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적용범위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 오기 정정(안 제2조, 안 제16조)
- 나.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3조)
- 세대 제한(15세대) 기준 삭제, 건물 노후 기준시점 명시(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)
- 다. 지원범위(보조금 지원 비율) 확대(안 제5조)
- 필요한 경비에서 50% 이하 지원(기존) ⇨ 60% 이하 지원(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붙임 참조

다. 입법예고: 2023. 8. 30. ~ 2023. 9. 19.(20일간), 의견 없음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3. 8. 22. ~ 2023. 8. 29.. 의견 없음

「붙임 1」 조례안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제1항제1호"를 "제2조제1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법 제2조제10호"를 "법 제2조제1항제10호"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15세대 이상이고 10년이"를 "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"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"50퍼센트"를 각각 "60퍼센트"로 한다.

제16조 중 "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"을 "「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공동주택"이라 함은「공동	1
주택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	
고 한다.) <u>제1항제1호</u> 에 따른	<u>제2조제1항제1호</u>
주택을 말한다.	·
2. "관리주체"라 함은 <u>법 제2조</u>	2 <u>법 제2조</u>
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.	제1항제10호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평창	제3조(적용범위)
군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	
동주택 중 <u>15세대 이상이고 10</u>	<u>사용승인일로부터 10</u>
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	<u>년이</u>
다. 다만,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	
따른 의무적 개・보수사업과 제	
5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	
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	
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원대상) ①군수는 다음	제5조(지원대상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	
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	
경비의 <u>50퍼센트</u> 이하의 금액을	<u>60퍼센트</u>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	

다. 다만,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 다.

- 1. ~ 4. (생략)
- ② (생략)
-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 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 관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<u>50</u> <u>퍼센트</u>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6조(준용) 예산지원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3
<u>60</u>
<u>퍼센트</u>
.
제16조(준용)
<u>「평창군 회계관리에</u>
<u>관한 규칙」</u>

〈공동주택관리법〉

-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공동주택"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.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.
 - 가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
 - 나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
 - 다.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
 - 10. "관리주체"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 - 가.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
 - 나.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
 - 다. 주택관리업자
 - 라. 임대사업자
 - 마.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(시설물 유지·보수·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.

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적용범위 확대 및 지원율 상향

나. 관련조문

○ 개정조례안 제3조(적용범위) : 현행 "15세대 이상" 공동주택에서 "2세대 이상"

모든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 확대

○ 개정조례안 제5조(지원대상) : 현행 "50퍼센트 이하"의 지원율에서 "60퍼센트

이하"의 지원율로 상향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공동주택 지원은 조례 제5조(지원대상) 제1항에 따라 "예산의 범위"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므로,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
- 최근 7년간 공동주택 지원 예산 규모(본예산 기준)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예산액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200,000	200,000

○ 현행 적용범위인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130단지 8,507세대 중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은 106개 단지 6,618세대이며,

개정안 적용범위인 2세대 이상 공동주택 277단지 9,492세대 중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은 235개 단지 7,444세대

나. 추계 결과

- 최근 지원 예산은 200,000천원으로, 모든 신청단지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임
- 적용범위 확대 및 지원율 상향에 따라 2024년 지원 예산을 300,000천원으로, 100,000천원 증액 필요

다. 재원조달 방안

○ 평창군 자체수입으로 조달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도시과장 김재열
연락처	(033) 330 - 2452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300,000	3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350,000
지방세수입		300,000	3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350,000
 세 출		300,000	3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350,000
공동주택유지보수		300,000	3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350,000
	402 민간자본이전		3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350,000
01 민간자본사업보조 (자체재원)		300,000	3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350,000
○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		300,000	3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350,000
재원 조달		300,000	3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350,000
	소 계	_	_	_	_	_	_
의존 재원	보조금	_	_	_	_	_	_
	지방교부세	_	_	_	_	_	_
자체 수입	소 계	_	_	_	_	_	-
	지방세	300,000	3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350,000
	세외수입	_	_	_	_	_	_
지방채		_	_	_	_	_	-
 기 금		_	_	_	_	_	_
공기업 특별회계		_	_	_	_	_	_
민간자본		_	_	_	_	_	-
해외자본		_	_	_	_	_	_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	-	-